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지침



## 한국항공대학교

##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한국항공대학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교원 및 연구원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제3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심의)** 학술연구비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과제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안과제로 지정한 과제 및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6조 (보안등급 변경)** 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내용이 본 대학교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7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 외에 제2호의 보안조치를 포함한다.

가.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비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라.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 자료, 결과물을 비밀로 취급하고 관련 연구시설 등이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산학협력단은 보안점검 및 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한다.

아.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일반과제

가. 한국항공대학교 연구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자의 책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규정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서식 1>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참여가 국가보안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연구 정보를 누설함이 법률위반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관계법규와 학칙을 준수하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관련법규와 학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을 것을 서약한다.

0000년 00월 00일

서약자(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서약자(참여연구원1) 소속	학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서약자(참여연구원2) 소속	학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참여연구원이 많을 경우 이어서 계속 작성

※참여연구원 변경 시, 본 서식 제출 필수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2>

##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현황

- \* 관리기관명 :
- \* 연구책임자 :
- \* 연구개발과제명 :
- \* 연구기간 :

접촉 연구원			접촉 외국인			접촉일시	접촉사유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만 작성

<서식 3>

외국인 참여연구원 출입 제한지역 및 열람 제한자료 목록

- \* 관리기관명 :
- \* 연구책임자 :
- \* 연구개발과제명 :
- \* 연구기간 :

출입 제한지역	열람 제한자료	비고

<서식 4>

##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

가. 교육일지

교육일시	연구개발과제명	교육내용	참석자	교육자		비고
				성명	서명	

나. 보안점검표

관리기관명 :

보안등급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명	보안상태	점검자	비고

<별첨 1>

## 해외출장자 보안교육 사항

### ① 출장 前 발표자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 실시

- 민감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사전점검 시행
- 세미나 또는 학회 등의 발표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자료 지참

### ② 노트북·휴대용 저장장치 등 전산장비 관리 철저

- 출장 전용 노트북을 적극 활용, 연구시 활용하던 노트북 지참 지양
- 공항·호텔 등에서 도난이나 복사 등 연구자료 유출에 주의
  - \* 중요자료는 상시 휴대하거나 대사관 등 믿을 만한 장소에 보관 요청
- 중요자료 지참시 ‘보안USB 메모리’ 등 사용, 암호화 상태로 보관

### ③ 연구성과 관련 질문시 답변에 유의할 것

- 연구성과(미발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회피 (또는 공개된 내용으로 답변), 의도하지 않은 연구정보 누설에 주의

### ④ 통역관 등 현지인 활용시 주의 요망

- 통역관이 활용 목적과 별무한 질문을 시도할 시에는 응답 회피

### ⑤ 도청 및 감시활동에 철저 대비할 것

- 해외에서는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도청되거나 감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민감한 연구내용에 대한 대화나 통화 자제

### ⑥ 상대방의 지나친 호의는 거부할 것

- 술자리에서의 말실수에 유의, 과도한 선물, 향응 등은 받지 말 것